

의안번호	제12호
의결 년월일	2026. 2. 5. (제334회)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제출자	금산군수
제출년월일	2026. 1. 23.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2호
------	------

제출년월일 : 2026. 1. 23.
제 출 자 : 금 산 군 수

1. 제안이유

- 금산군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한 임업 경쟁력 강화와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 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4조, 제5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 기 타
 - 규제심사 대상사무 검토 : 해당없음(기획예산과-18674)
 -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8611)
 - 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가족정책과-44355)
 - 입법예고(2025. 10. 30. ~ 11. 20.) : 제출의견 없음

금산군 임업 및 산촌 진흥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산군 임업 구조 개선 및 산촌 지역 진흥을 통해 임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산촌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업을 말한다.
2.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
 - 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립가 또는 이들로 구성된 생산자단체
 - 나.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
 - 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 및 지회를 포함한다)
 - 라.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조합

3.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4. “임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

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나.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품목

제3조(책무) ①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
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 지
역의 진흥 등 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상 주소 또는 군에 사업 소재
지를 둔 임업인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내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임업인 등에게 예산
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2. 산림의 생산기반 확립과 산림관리 기반시설 지원사업
3. 산림을 활용한 생태·문화·휴양에 관한 사업
4. 임업 및 산림경영에 관한 행사
5.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정보제공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임업 및 산촌 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용추계서 (제4조제2항 관련)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 가. 비용 발생 요인 : 임업·산촌 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사업 추진
나. 관련 조문 : 안 제4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내용)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임업·산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 발생
- 나. 추계 결과(산출기초 등)

사업명	산출기초	예산액(천원)
계		43,500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000천원*10개소	30,000
임업후계자 대회 참가지원(도, 전국)	11,000천원*1식	11,000
임업후계자 역량강화교육 지원	2,500천원*1식	2,500

- 다. 재원조달방안 : 자체재원(군비)

3. 작성자

산업환경국 산림녹지과장 한 민 석 (☎ 750-3400)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43,500	43,500	44,500	45,000	45,000	221,500
임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임업후계자 대회 참가지원(도, 전국)		11,000	11,000	12,000	12,000	12,000	58,000
임업후계자 역량강화 교육지원		2,500	2,500	2,500	3,000	3,000	13,500
재원 조달		43,500	43,500	44,500	45,000	45,000	221,5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자체 수입	소 계	43,500	43,500	44,500	45,000	45,000	221,500
	지방세	43,500	43,500	44,500	45,000	45,000	221,500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관 계 법 령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립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제7조제1항 관련)

종류	품목명
수실류	밤, 감, 잣, 호두, 대추, 은행, 도토리, 개암, 머루, 다래, 복분자 딸기, 산딸기, 석류, 돌배
버섯류	표고, 송이, 목이, 석이, 능이, 싸리, 꽃송이버섯, 복령
산나물류	더덕, 고사리, 도라지, 취나물, 참나물, 두릅, 원추리, 산마늘, 고려 영경귀(곤드레), 고비, 어수리, 눈개승마(삼나물)
약초류	삼지구엽초, 삼주, 참쑥, 시호, 작약, 천마, 산양삼, 결명자, 구절초, 약모밀, 당귀, 천궁, 하수오, 감초, 독활, 잔대, 백운풀, 마
약용류	오미자, 오갈피나무, 산수유나무, 구기자나무, 두충나무, 헛개나무, 음나무, 참죽나무, 산초나무, 초피나무, 율나무, 골담초, 산겨릅나무, 산사나무, 느릅나무, 황칠나무, 꾸지뽕나무, 마가목, 화살나무, 목단
수목부산물류	수액(樹液), 나뭇잎, 나뭇가지, 나무껍질, 나무뿌리, 나무순 등 나무 (대나무류를 포함한다)에서 나오는 모든 부산물
관상산림식물류	야생화, 자생란, 조경수, 분재, 잔디, 이끼류
그 밖의 임산물	위 품목 외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 따른 임산물로서 목재(목재제품을 포함한다)와 토석을 제외한 품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1. 수실류·버섯류·산나물류·약초류·약용류·수목부산물류·관상산림식물류
2. 그 밖의 임산물 중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

[발췌] 임산물생산업의 “그 밖의 임산물” 품목

제2조(그 밖의 임산물 품목)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 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그 밖의 임산물” 품목은 다음과 같다.

종류	품목명
그 밖의 임산물	가래나무, 가시오갈피, 곤달비, 관중, 노각나무, 동굴레, 머위, 멀꿀, 바디나무, 병풍쌈, 산복사나무(개복송아), 생열귀나무, (성)산수국, (성)쑥부쟁이, 왜우산풀, 우산나물, 으뜸당굴, 피칸, 차나무